

정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고시

— 임상돈·양성돈은 살처분,
음성돈은 지정 도축장 출하 —

◇…정부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정책을 변경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오제스키병 발생 농장의 돼지 전두수 살처분정책을 포기하고 임상돈과 양성돈만 살처분하고 음성돈은 도축장을 지정하여 방역관 입회하에 출하하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고시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정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고시

현행 (1988. 3. 4) (농림수산부고시 제88-8호)	개정 (1988. 12. 31) (농림수산부고시 제88-39호)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 요령을 정함으로써 오제스키병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오제스키병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검사대상) 오제스키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종돈장의 돼지 2. 축산법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받은 양돈장의 돼지 3. 기타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제3조(검사대상) 오제스키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종돈장의 돼지 2. 축산법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받은 양돈장의 돼지 3. 기타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제4조(검사실시기준 및 검사대상 선정) ①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돈장에 대한 검사는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2. 기타 양돈장에 대한 검사는 발생이 의심되거나 검사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 ② 검사대상은 종돈과 모돈 또는 개체의 증상으로 보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순서로 선정하여 가급적 돈사별로 고른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되 별표1의 기준두수 이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실시기준 및 검사대상 선정) ①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돈장에 대한 검사는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2. 기타 양돈장에 대한 검사는 발생이 의심되거나 검사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 ② 검사대상은 종돈과 모돈 또는 개체의 증상으로 보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순서로 선정하여 가급적 돈사별로 고른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되 별표1의 기준두수 이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오제스키병의 분포 확인이나 추적조사를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중인 돼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정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고시

<p>현행 (1988. 3. 4) (농림수산부고시 제88-8호)</p>	<p>개정 (1988. 12. 31) (농림수산부고시 제88-39호)</p>
<p>제5조(검사기관) 오제스키병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실시한다.</p>	<p>제5조(검사기관) 오제스키병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실시한다.</p>
<p>제6조(검사방법) 오제스키병 검사는 간이 진단키트로 일차 검사를 실시하고, 의양성 또는 양성일 경우에는 혈청중화시험을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최종 판단한다.</p>	<p>제6조(검사방법) 오제스키병 검사는 간이 진단키트로 검사하거나 또는 혈청중화 시험을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판단한다.</p>
<p>제7조(검사결과 조치) ① 검사기관장은 검사결과 양성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오제스키병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직할시장,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시험소장은 종돈장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당해 종돈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종돈장 정문에 별표2의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부착토록 한다.</p> <p>③ 시험소장은 양돈장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제7조(검사결과 조치) ①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사결과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청 검사결과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하여 가축 이동제한, 출입제한, 소독실시 등 필요한 긴급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조치를 위하여 경찰이나 양돈협회 및 공수의 등 필요한 기관의 협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에 입하여야 한다. 3.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생농장의 사육중인 돼지 전두수 검사 나. 양성축은 전두수 살처분 4. 음성축을 출하코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도축장에서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하에 도축한다. 5. 도지사는 지정한 도축장에 대하여 시설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내외의 소독실시 및 부산물 처리확인, 운반차량 소독실시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양성축 발생농장은 매 3개월마다 전두수 검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양성축 발생농장중 오제스키병 근절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육중인 돼지 전두수를 매 3개월 간격으로 연속 2회 검사한 결과 음성일 경우에 본병 근절농장으로 인정한다. ③ 시험소장은 종돈장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당해 종돈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종돈장 정문에 별표2의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부착토록 한다. ④ 시험소장은 양돈장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p>제8조(수입종돈에 대한 사후관리) 국립동물 검역소장은 수입종돈 검역결과를 검역종료 즉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종돈은 입식 양돈장에서 3개월간 별도의 돈사에서 격리 사육 2. 수시 임상검사 및 종료시 혈청검사 실시 	<p>제8조(수입종돈에 대한 사후관리) 국립동물 검역소장은 수입종돈 검역결과를 검역종료 즉시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 다음과 같이 특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종돈은 입식 양돈장에서 별도의 돈사에서 격리 사육 2. 수시 임상검사 및 종료시 혈청검사 실시

현 행 (1988. 3. 4) (농림수산부고시 제88-8호)	개 정 (1988. 12. 31) (농림수산부고시 제88-39호)
제9조(종돈등록과 검정시 확인 등) ① 종축 등록기관과 검정기관에서는 당해 반기중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정을 실시한다. ② 시·도지사는 종돈장에 대한 정기 점검시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제9조(종돈등록과 검정시 확인 등) ① 종축 등록기관과 검정기관에서는 당해 반기중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정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종돈장에 대한 정기점검시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벌칙적용) 시·도지사는 종돈업자가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및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0조(벌칙적용) 도지사는 종돈업자가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및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			
○ 발급번호: 제 호			
종 돈 장	명 칭	등 록 번 호	계 두
	소재지	전 화 번 호	
	경영자	주민등록번호	
사육두수	종 돈 : 두 모 돈 : 두 육성돈 : 두 자 돈 : 두		
검사목적	돼지오제스키병 감염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채혈일자		검 사 된 월 일	
검사두수			
판 정	검사결과 오제스키병이 없음.		
위와같이 오제스키병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표1) 검사대상 기준두수

돼 지 사 육 두 수	검 사 두 수
500두 이하	20두 이상
501두 이상~1,000 이하	30두 이상
1,001두 이상~5,000 이하	50두 이상
5,001두 이상~10,000 미만	70두 이상
10,000두 이상	100두 이상

(별표2)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표시판

농장명 :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발생이 없는 농장임. <div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div>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